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5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민홍철·문대림·박용갑

백혜련 • 안태준 • 이건태

이기헌 • 이연희 • 이재강

조 국・한정애・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리시설의 의무 설치 범위에 노인의 사회적 돌봄에 관한 대표적인 시설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함과 아울러 노인의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양 로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 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양로시설등의 설치 현황 등을 고 려하여 양로시설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로시설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 |
| | 공주택사업자는 500세대 이상 |
| | 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
| | 단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단지 |
| | 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 |
| | 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
| |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
| |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양로 |
| | 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
| | 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
| | 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
| | 지역의 양로시설등의 설치 현 |
| | 황 등을 고려하여 양로시설등 |
| | 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u>하다.</u> |